

[변경 대비 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펀드명	BNK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변경서류	집합투자규약
변경사유	- 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
효력발생일	2023년 06월 12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의2(투자신탁의 세제혜택 등)	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	<신설>	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① (생략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생략)	① (현행과 동일)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 (현행과 동일)
제12조(수익자명부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 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~ ⑤ (생략)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	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전자증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</u> 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 ② ~ ⑤ (현행과 동일) 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

		<p>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<u>종류 및 좌수</u>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 (현행과 동일)</p>
제14조(투자목적)	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	<p>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른 <u>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</u>으로서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제1호가목 등에 따른 <u>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</u>으로서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	<p>① (생략)</p> <p>1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, 「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1-1.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(이하 “신용평가업자”라 한다)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 BBB+이하(「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의 경우 A3+이하)인 사채권(이하 “비우량채권”이라 하며,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다만,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)</p> <p>2. ~ 10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, <u>전자증권법</u>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1-1. <u>신용등급(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)</u>이 BBB+이하(<u>전자증권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에는 A3+이하</u>)인 사채권(이하 “<u>고위험고수익채권</u>”이라 한다)</p> <p>2. ~ 10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동일)</p>

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	<p>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따른다.</p> <p>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% 이상이고,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% 이상일 것. 이 경우 "평균보유비율"은 비우량채권과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(이하 "일일보유비율"이라 한다)을 3개월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.</p> <p>1-1. <신설></p> <p>1-2. <신설>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---(생략)--- 따른다.</p> <p>1.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45% 이상이고,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60% 이상일 것이며 이에 따른 평균보유비율 계산할 때 채권의 신용등급은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채권이 이 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후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한다. 이 경우 "평균보유비율"은 해당 채권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(이하 "일일보유비율"이라 한다)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하며,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한다.</p> <p>1-1.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날의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은 해당 목에서 정한 비율로 본다.</p> <p>가. 신용등급이 BBB+ 이하(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+이하)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: 100분의 45</p> <p>나. 가목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: 100분의 60</p> <p>1-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, 투자신탁의 설정일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			<p>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만기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일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로 한다.</p> <p>2. ~ 9. (생략)</p>	<p>2. ~ 9. (현행과 동일)</p>
제18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분리과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	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1호의 단서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후 3개월</p> <p>2. 투자신탁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</p> <p>3.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<u>비우량채권</u>의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45% 또는 60% 미만인 경우 이를 각각 45% 또는 60%로 본다.</p>	<p>① ~ 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제1호 <u>내지 제1-2호</u>의 단서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후 3개월</p> <p>2. 투자신탁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</p> <p>3. 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<u>고위험고수익채권</u>의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45% 또는 60% 미만인 경우 이를 각각 45% 또는 60%로 본다.</p>	
제32조(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)	문구 조정	<p>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<u>당해 종류 수익증권</u>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	
제43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①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① 투자신탁을 ---(<u>생략</u>)---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</p>	

		<p>② 투자신탁을 ---(생략)---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 투자신탁을 ---(생략)---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</u>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동일)</p>
<부칙>		<신설>	<p>< 부 칙 3 ></p> <p>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끝>